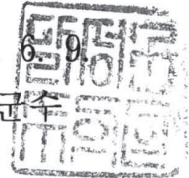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837
----------	------

제출일자 : 2020. 6. 9.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 (2019. 6. 12. 시행)으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 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포상금 신고 적용범위 및 신고사항, 방법, 신고사항 처리(안 제3조 ~ 제6조)
- 다.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대상, 지급결정, 지급신청(안 제7조 ~ 제10조)
- 라. 포상금의 지급 및 시기, 지급 제외(안 제11조 ~ 제12조)
- 마. 포상금의 환수(안 제13조)
- 바. 신고자 보호(안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참고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규제심사 : 원안 동의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0. 4. 29. ~ 2020. 5. 20.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6) 비용추계서 : 생략(「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1호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의 지급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을 정하여 복지예산의 건전한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수급”이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이하 “급여”라 한다)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에서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의도적으로 불법을 행하거나 상습적인 신고 누락 및 지연 신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제2호에서의 “상습적인 신고 누락 및 지연 신고”란 주기 6개월 이상, 급여별 1인 지급액(6개월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부정수급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 중 부정수급을 한 사람
 - 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도록 도운 부양의무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
5. “신고인”이란 수급자의 부정수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6. “포상금”이란 신고인의 신고 사항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에 따라 그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사회보장급여법 중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에 한하여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3. 「의료급여법」 제32조의3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8조의2
4. 「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4조(신고사항) 신고인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통해 급여를 부정수급 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1.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 기 신고된 자료의 변동에 대해 신고를 누락하는 행위
2.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 새로 취득한 재산이나 신규로 발생한 소득 및 가구원 변동에 대해 미신고하는 행위
3. 수급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4. 위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5조(신고방법) ①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방문, 우편,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면 신고인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정수급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고사항에 대해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고인에게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3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제4조에 따른 사항을 제5조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해당 신고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제7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 결정) 군수는 제8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지급이 결정된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금 지급 신청) ① 제9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지 받은 신고인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금의 지급 및 시기) ① 포상금은 제9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기재된 신고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같은 신고대상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가 2건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같은 사항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군수는 그 신고인들로 하여금 포상금을 지급받을 대표자를 지정하게 하고, 그 대표자에게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2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6항제4호에서 “보장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신고된 내용이 인터넷 등에 이미 공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인 경우
4.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시효가 만료된 경우
5. 사법기관이나 타 행정기관에서 이미 수사나 조사가 개시 또는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6.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또는 행·재정상의 불이익을 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7.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법령 등의 위반을 확인하는데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8.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달성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지급을 제외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3조(포상금의 환수) ① 군수는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② 군수는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 금액 및 납부 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자 보호) ① 군수는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포상금 지급기준(제7조 관련)

신고 대상 유형	환수결정금액	지급액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 포상금	◦ 500만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 × 30/100 ※ 최대 지급금액 150만원
	◦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환수결정금액 × 20/100 ※ 최대 지급금액 250만원 (150만원 + (500만원 초과 × 20/100))
	◦ 1,000만원 초과	• 환수결정금액 × 10/100 ※ 최대 지급금액 5천만원
※ 공통기준 ◦ 예산 범위에서 지급 ◦ 환수결정금액은 환수 결정된 정부지원금을 말한다. ◦ 천원 미만은 절사함		

접 수 일					처리기한	
접수번호					60 일	
신 고 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사무실)		(휴대폰)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자택, 사무실)		(휴대폰)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작성 가능					
증빙 서류	1. 2. 3. 4.					
비 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달성군수 귀하

포상금 결정 통지서

1. 지급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 .
주소			
연락처			

2. 신고개요

신고일자		신고번호	
피신고인			
신고내용			

3. 결정내용

신고자	에게	포상금	원	지급
-----	----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달 성 군 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개요	신고번호	신고(접수)일자	년 월 일
	신고내용	결과통지일자	년 월 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있음 (기관명 :) [] 없음	
	수령여부	[] 있음 (금 액 :) [] 없음	
※ 위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지급한 포상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 13조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달성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포상금 지급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담당자가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	--	---------	--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비고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달성군 생활보장과

접수담당자 : (인)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	--	---------	--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비고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달성군 생활보장과

접수담당자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처리부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접수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	신청인 인적사항			부정수급 신고			처리결과		결과 통지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접수 부서	접수 일자	접수 번호	인용 여부	포상금 (단위 : 원)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① 수급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보장기관의 장은 그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거나 그 변경·중지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이미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 또는 반환받을 금액은 각각 부정수급자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 이를 환수하거나 반환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53조의 2(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제1항의 부정수급자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5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를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환수를 명한 후에 해야 한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신고인 1명당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 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스스로 대표자를 지정 해야 하고, 그 대표자가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 ⑤ 같은 자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가 2건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1. 신고 된 내용이 언론 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인 경우
 - 2. 신고 된 내용이 이미 조사, 수사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 3. 같은 자에 대한 같은 내용의 신고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장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⑦ 보장기관의 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 1. 위법·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⑧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부정수급 및 신고포상금 제도에 관한 사항을 보장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홍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⑨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신고인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세부 기준,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장기관의 장이 정한다.

□ 「국가재정법」

-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 ③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 ④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참고 2

「사회보장급여 부정신고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6호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의 지급 세부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중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에 한하여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3. 「의료급여법」 제32조의3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8조의2
4. 「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포상금 지급대상자)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당 신고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를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부정수급자
2.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법인·단체·시설

제5조(지급결정) 보건복지부장관은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① 제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지받은 신고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 보건복지부장관은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기재된 신고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 지급제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6항제4호에서 “보장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란 익명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여 신고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다만, 2016년 4월 29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사실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4조(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